



불만제기

호주 인권위원회는 성, 인종, 장애 및 연령 차별, ILO III 차별 및 인권 위반행위에 대한 불만제기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호주 인권위원회에 불만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

- **성차별**은 성, 성 정체성, 간성 상태, 임신, 결혼 혹은 관계성 상태, 모유 수유, 가족 책임 및 성적 지향에 근거한 성 희롱 및 성 차별을 포함합니다.
- **장애 차별**은 신체적, 지적, 감각, 학습 및 정신적 장애; 질병 혹은 질환; 업무 관련 부상;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장애; 장애 보조; 보조 동물 및 장애인 연관성 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합니다.
- **인종 차별**은 인종, 색깔, 국적 혹은 민족성 및 이민 상태에 근거한 인종 혐오 및 차별을 포함합니다.
- **연령 차별**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다는 것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합니다.
- **ILO III 차별**은 종교, 범죄 기록, 노동 조합 활동, 정치적 의견 및 사회적 출신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포함합니다.
- **인권**은 특정한 국제 인권 문서, 가령 시민 및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정, 아동 권리 협약, 그리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것에 대하여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혹은 연방정부가 취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귀하는 호주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이 불만제기를 할 수 있으며 불만제기를 하는 데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불만제기 절차의 단계들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하기

- 어떤 사항에 관해 불만제기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1300 656 419**에 전화하거나 infoservice@humanrights.gov.au로 이메일을 보내어 인권위원회의 국립 정보 서비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에서 귀하에게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불만제기 양식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에서 귀하를 돕지 못할 경우,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귀하를 의뢰하겠습니다.

불만제기

- 불만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불만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본 기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거나 본 기관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선호하는 언어로 불만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본 기관에서 귀하가 불만제기를 작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불만제기 작성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본 기관에서 귀하의 불만제기를 다룰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조사

- 본 기관에서 불만제기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것이며 귀하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권위원회는 귀하가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연락을 하고 이들에게 귀하의 불만제기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들에게 귀하의 불만제기에 대한 특정한 정보 및/혹은 답변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불만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인권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는 귀하에 대한 민감한 정보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경우에 인권위원회는 귀하의 불만제기를 계속 다루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 인권위원회는 귀하에게 조정에 의한 불만제기 해결 시도에 관해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 조정이 의미하는 것은 본 기관이 귀하와 그리고 귀하가 불만을 표시하는 관련 당사자 혹은 기관이 해당 사안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 조정은 '조정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면 회의에서 혹은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만제기는 조정자와의 대화 및 이메일 교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불만제기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통해, 정책 변경 혹은 보상 등이 있습니다.

가능한 법정 조치 – 성, 장애, 인종 및 연령 차별

- 인권위원회는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 귀하의 불만제기가 해결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중지될 경우 귀하는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인권위원회가 불만제기를 종결한 이후 60 일 내에 호주 연방 순회 법원 혹은 호주 연방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위원회는 귀하를 위해 이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귀하가 법정에서 사건을 제출하도록 도울 수도 없습니다.
- 법정으로 가길 원하시면 귀하가 변호사 혹은 법률 서비스를 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보고 - ILO III 차별 및 인권

- 불만제기가 해결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ILO III 차별 혹은 인권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차별 혹은 인권 위반이 발생했다고 여길 경우 위원장이 그 사안을 연방정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위원장이 해당 사람이 겪은 손해나 부상에 대한 보상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국회에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 차별 및 인권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의 예는 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humanrights.gov.au/publications/reports-minister-under-ahrc-act>.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호주 인권위원회 연락처:

전화

국립정보서비스: 1300 656 419

TTY: 1800 620 241

NRS 133 677

팩스: (02) 9284 9611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131 450** 으로 연락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1800 620 241 에서 TTY 를 통해 본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청각 혹은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국립 릴레이 서비스 (NRS)에 133 677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Auslan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본 기관에서 주선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요청하시면 대체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편

GPO Box 5218

Sydney NSW 2001

온라인

이메일: infoservice@humanrights.gov.au

웹사이트: www.humanrights.gov.au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humanrights.gov.au/complaints/lodging-your-complaint>.

일반 법률 조언

불만제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에서 차별 및 희롱에 대한 무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egal Aid 법인 (<https://www.nationallegalaid.org/for-individuals/>) 혹은 가까운 지역사회 법률 센터 (www.nacli.org.au/directory)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면제 조항: 이 정보 자료에 대한 정보는 안내용입니다. 법률 조언을 위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